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범사회적 통합모델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 훈*

1. 문제의 제기

사회복지실천가¹⁾들은 법을 그렇게 친숙치 않은 속성을 지닌 가깝게 하기 어려운 언어로 생각한다. 법률전문가와 법원도 자신의 전문직적 작용이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기관과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문가는 상호이해와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을 원하지만, 법률가들은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해당 사건의 승소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변호사도 소송의 상대방과 대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고객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말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문구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전문직이나 그 직업 고유의 사명, 내용 및 이념을 갖고 있다. 법에서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나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법은 분쟁의 해결을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 즉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조직을 통해서 인간의 복지문제들을 확인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전문직은 다르다. 그렇지만 양 전문직은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관계 속에서 상대 영역을 완성시켜주고 강화시켜준다. 즉, 법은 사회복지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복지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향, 구조 및 적법성을 제공해 준다. 반면 사회복지실천은 법에게 인간관계, 문제들 및 기법들(즉 리서치, 계획수립 및 정책분석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Albert, 1986). 그러므로 이 양 전문직의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회조건들의 개선의 방법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이 논문에서 ‘사회복지실천’이란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체계를 갖춘 전문가가 정책, 제도, 행정, 직접적 서비스에 관하여 개입하는 과정에서 행하게되는 모든 전문직적 활동을 지칭한다.

1980년대 이후 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동모금법 제정, 각종의 사회복지법 소송 및 입법청원운동 등은 법제도의 영역에 대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복지전문영역이 관심을 표명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사회적 열악계층이나 문제집단에 대한 법률서비스(YMCA의세입자보호상담, 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 등)나 형사사법제도의 범죄자들(보호관찰제도, 갇생보호제도, 청소년상담실 등)에게 관심이 계속 있어왔다. 이 경우는 사회복지부문에서의 관심은 대개 대상자집단의 권익옹호주장을 통한 법제 개정운동이나 범죄자에 대한 범죄성의 문제해결 또는 사회적 지원방안에 초점이 있으며, 드물게는 법률서비스처럼 법률 해석내지는 안내차원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나아가서 법사회적 영역에서 전문직간의 공동연구의 이익, 법적 기법이 필요한 사회복지 셋팅들, 법적 위임사항의 수행조건들, 법과 법적 기법 교육의 필요 예측, 사회복지서비스 행정과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실천의 한계로서의 “적정절차(due process)”의 이해, 사회복지실천의 옹호(advocacy)의 원리와 그 기법, 법적 자유재량과 의사결정권의 관계 및 의미, 비밀보장의 원리와 실천적 문제, 위법적인 전문직의 행위, 법적 쟁점이 두드러진 특정대상집단 또는 특정 셋팅 등 다양하게 관심이 주어지고(Albert, 1986), 이 관심이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법률 전문서의 조화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두 학문과 전문직이 상호 이해적 협조가 가능한데도, 각자가 필연적으로 독자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짐으로 인해, 두 학문과 전문직간에 부조화가 존재하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부조화는 사회복지문제해결에 변화를 낳는 역동적인 힘일 수도 있다. 이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학문교류적인 쟁점들을 설명하고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의 해결을 구조화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더구나 교육적 차원에서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다. 앞으로 사회정책 및 서비스전달과 관련하여 법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매우 크다. 그래서 다차원적 문제해결의 통합적 관점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 통합적 관점은 두 영역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이런 학문교차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접근을 증진시킬 기제를 제공하며, 그 결과 전문직적 행위를 알려주고 학문간 상호의존성의 자각을 증진시키는 가치를 가진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즉, 사회복지학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학제간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복지학 전공학생들은 세부전공과 관련된 사회과학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하며, 다른 학과에 대한 배타적인 풍토가 극복되어야하고, 2) 사회복지학의 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인접 사회과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거나, 3) 나아가서 사회복지전문직이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과 관련하여

2) 김태성의 토론문, 신선편역의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론』 커리큘럼의 방향”, 『2000년대 한국사회복지교육의 방향』,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4, 67쪽.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기 위해 사회복지경제 및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⁴⁾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그 해석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전공자의 사회과학적 지식으로서의 법적 지식 습득의 필요성, 나아가 사회복지학에서의 사회복지법의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직접적 서비스제공의 사회사업가가 그 임상적 관심의 보완으로서 정책분야에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⁵⁾의 연장선상에 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수준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지식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학 전공의 필수과목으로 규정되고, 국가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제의 교육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의 학습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학의 일반 이론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사회복지학의 이념과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회복지법 연구와 적용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두 전문직이 함께 만나는 영역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방식을 도출시키는 통합적 관점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문가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사회복지학이 추구하는 목적인 인간다운 사회의 성취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특징을 살피고, 사회복지법 영역의 학제적 성격과 미국의 「사회사업과 법」 교육의 요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 교육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탐색을 통한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의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특징의 분석은 먼저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와 교과목 지침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교육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현재 출판된 주요 「사회복지법제」 저서들을 대상으로 총론 및 각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론의 내용에서는

3) 김상균의 토론문, 신섭중의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론」. 커리큘럼의 방향”, 「2000년대 한국사회복지교육의 방향」,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4, 59쪽.

4) 남기민의 토론문, 신섭중의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론」. 커리큘럼의 방향”, 「2000년대 한국사회복지교육의 방향」,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4, 63쪽.

5) 장인협, 전남진 편역(1982),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개발연구원, 3쪽-7쪽.

법의 기초지식, 사회복지법의 기초지식을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 각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분류체계를 수용했는지, 해당 분류에서 어떤 법들이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회복지와 법』의 교육은 미국의 선행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법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사회복지법제교육의 방향과 가상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3. 현행 사회복지교육과정과 「사회복지법제」

1) 한국의 사회복지교육과 교과목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문제의 완화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각 교과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에 근거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전체 교과과정은 사회복지학의 전문 지식과 기술 내용을 잘 통합하고, 이론 학습과 실무 실습을 잘 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66년 창설된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교과과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2002). 교과과정은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그 연구는 협의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1998년에는 사회복지교과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가 발간되었는데, 그 이전에 교과과정에 대해 관심과 노력도 지속되어 왔지만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가 이 지침서 발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전공의 교과목을 필수 10과목, 선택 20과목을 규정하고 각 과목에 대해서 표준적 강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협의회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2002: 16).

- 다양한 인간의 욕구, 사회복지 이념, 사상,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해결 접근 능력을 향상시킨다.
- 과제를 성취하고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향상시킨다.
-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정책, 서비스자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식화하며 실행한다.
-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집단에게 권한을 주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또는 행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수행하

고 사회적 또는 정치적 행동을 한다.

-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험한다.

또한 협의회는 전술한 교육과정에 의해 양성된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2002: 19), 사회복지의 교과과정은 이것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돕는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표 1>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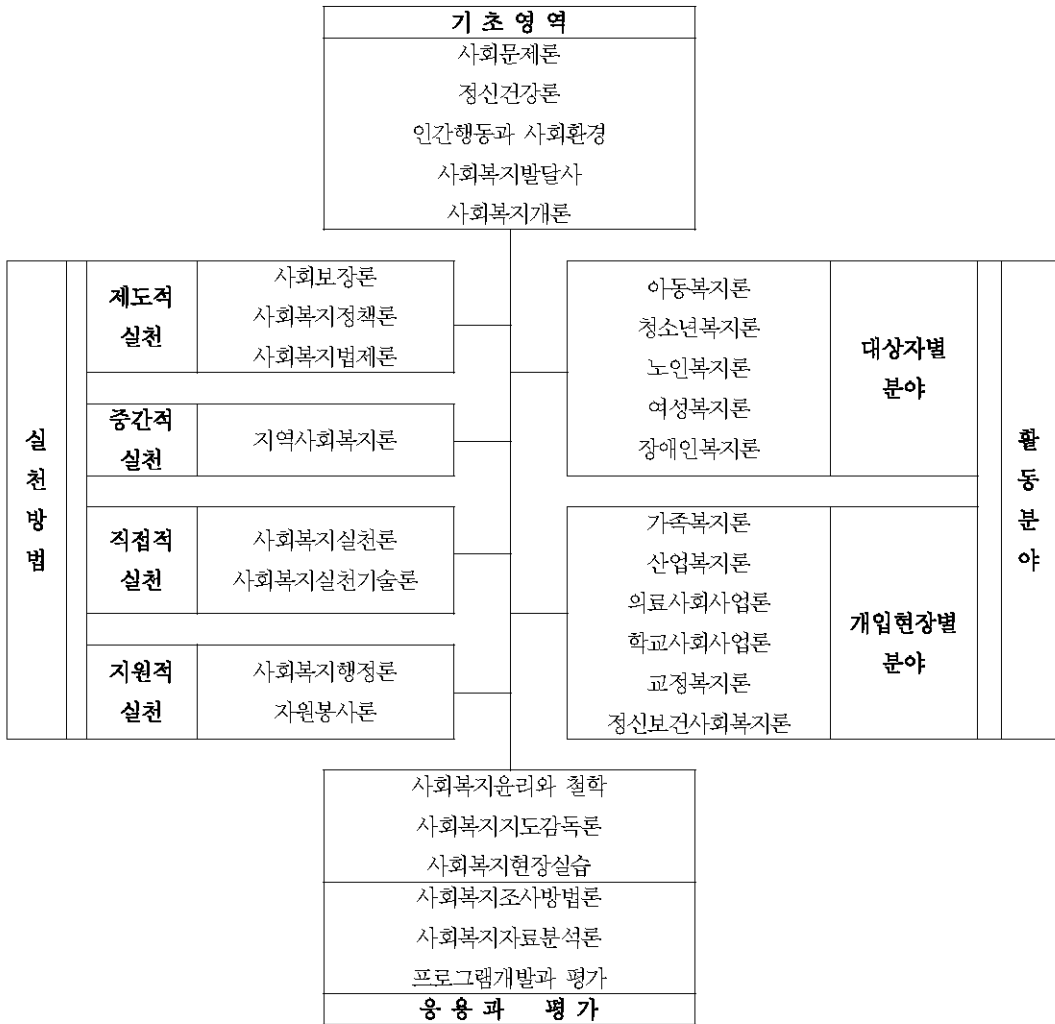
업무 영역	구체적 수행 내용
개인, 가족, 집단의 문제진단 및 평가	자료수집과 분석, 진단, 사정평가, 접근계획과 계약
지역사회 문제파악과 서비스 제공	욕구조사,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과 시행,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 자원동원,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형성과 면접	문제 해결과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적절한 개입을 위한 관계 형성과 면접
서비스 대상에 따른 서비스 내용 결정	서비스 대상의 욕구와 문제에 관한 진단과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계획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접수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정신보건상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및 평가	욕구와 실태, 효과측정 조사연구 및 자료분석, 지역사회문제 진단과 평가, 지역사회자원의 발견과 개발, 프로그램계획과 시행, 평가
각종 사회복지기관 행정	사회복지기관 조직 및 운영, 일반 사회복지사 지도와 감독, 사업계획 및 추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조사 및 선정, 복지조치, 복지급여제공, 생활지도 및 서비스 홍보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에 참여 및 제안	사회복지정책분석 및 평가, 사회복지 정책제안
사회보장정책 시행	대상자 자격 결정, 급여제공 등 사회보장 업무
사회복지학 전공 실습생과 신입 사회복지사의 지도감독	
사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연계활동	
자원봉사자 조직, 교육 및 훈련, 배치, 지도 및 감독의 역할	

2) 교과영역과 해당교과목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2002: 17). 즉, 실천윤리와 가치, 사

회복지기초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방법론, 법제, 제도 및 정책, 행정 및 프로그램, 조사와 자료분석, 사회복지분야론, 사회복지실습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은 법제, 제도 및 정책 영역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목의 분류는 각 교과목의 상호연관성의 표현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제 교과목도 다른 영역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내용이 거시적, 미시적 차원이 있으며, 이 각 차원이 여러 개입의 영역에서 구현되며, 이것들이 개입의 차원과 영역을 위한 사회복지학의 기초적 지식과 응용적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림1>의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연계도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김훈, 2003).

<그림 1>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연계도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기초영역, 실천방법영역, 활동분야영역, 응용과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특히 실천방법에서 거시적 실천과 미시적 실천을 모두 포함하며, 이 실천방법이 동일하게 개입의 여러 영역에 관계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사와 평가 및 실습을 하나의 영역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림 1>에서는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 또는 교과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영역의 교과목들일지라도, 각 교과목간에는 독자적인 특징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실천에서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이 있는데, 각각의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이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론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이론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이 정책과 제도를 다룬다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의 각 학습 영역에서 사회복지법의 해석을 통한 사회복지의 이해와 적용을 다루는 것이다.

3) 현행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제안적 내용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서(2002: 29-32)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과 함께 ‘법제, 제도, 정책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분류하고, 이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①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②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제고, ③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 ④ 실정법 해석능력의 배양에 두고 있다.

나아가서 교과목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즉, 사회복지학을 토대로 하고 법학적 개념도구를 응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시킨다.

지침서에 의하면 이처럼 사회복지법제 학습에서 법학적 개념도구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법을 학습하고, 나아가서 판례의 학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천에 적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총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사회복지상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의 사회복지법 입법사,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조례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판례의 학습을 안내하고 있다.

4) 「사회복지법제」 교과서의 특징 개관

여기서는 학술적 이론적 배경보다는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저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사회복지법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았다.

(1) 기본적인 특징

<표 2> 주요 관련 저서의 저자 및 학문적 배경

제 목	출판년(최초출판)	저자	학 사	석 사	박 사	현직(학과, 전공)
한국사회복지법강의	2003(2003)	박차상	사회복지학	-	복지행정	사회복지학
		정상양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전용득	-	-	법학, 경영학	-
		김옥희	-	-	행정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법제론	2002(2002)	김기원	행정학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1(1991)	신섭중	정치학	사회사업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신복기	-	-	-	사회복지학
		현의성	-	-	-	사회복지학
		김경호	-	-	-	사회복지학
		박경일	-	-	-	사회복지학
김익균	-	-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법론	2000(1994)	김근조	법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법제론	2001(1998)	윤찬영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1(-)	장동일	교육학	정치외교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1(2001)	현의성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법제론	2002(2002)	이태영	정치외교학	-	정치학	사회복지학
		고영훈	정경대학	법학	법학	법학
사회복지서비스법	1999(1987)	박석돈	법학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법제론	1997(1991)	김만두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	-
한국사회보장법론	1992(1992)	김유성	법학	법학	법학	법학
한국사회보장법론	2003(2003)	전광석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1998(1998)	박홍규	법학	법학	법학	법학
		권기홍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 각 저서에 표현된 바를 정리하였으며, ‘-’은 해당 저서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나타냄.

「사회복지법」의 저서들은 <표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1990년대초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다량 저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법령적으로 정리되고, 1998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 실시되고,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이 사회복지전공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국가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저서들은 총 13권이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서의 명칭은 다양하나, 대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 저서의 명칭에서 이론의 성격을 추정케하는 ‘론’의 사용여부는 사실 내용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듯하다.
- 내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다루는 저서는 2권이지만, 박석돈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김만두는 ‘사회복지법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법’의 구분은 전자가 법제도의 종류와 그 내용을 다루고 후자는 사회복지법의 이론까지도 밝힐 것으로 추정되나, 사실 저서들간에 내용이 구별되어 서술되는 것 같지는 않다.
- ‘사회보장법’은 주로 법학전공의 저자들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보장법’의 저서는 주로 법학 전공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법의 명칭이 어떠하든 각 저서들이 설명하는 법들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한 성격의 법령들을 다루는 데도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학문 영역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통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의 학습과 접근의 관점은 매우 학제적이며 독특하다. 사회복지법의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은 이러한 학제적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총론의 내용

사회복지법의 저서들은 대부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론과 각론의 구분방법은 법학 전공의 저서들의 일반적인 구분방법이다. 「사회복지법제」도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학 전공저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법의 총론은 사회복지학의 가치와 이념을 법률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에 적용시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법의 총론은 보통 사회복지법의 개념, 이념 및 목적,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체계,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달,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및 효력, 헌법과 기본권, 사회복지법 연구방법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표 3>에 나타나는바와 같이

저자에 따라서는 다루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이 ‘법’의 하나인데, 이 총론적 수준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달성되는 지를 확신할 수 없다. 법은 하나의 독특한 학문을 영역을 이루고 있고, 그 특징이 사회복지학의 이념이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는데, 법에 대한 이해가 간과된 채 사회복지법의 영역에서 사회복지학의 가치와 이념만이 주장됨으로서 오히려 추구하는 문제해결이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몇 개의 저서에서는 법의 기초이론을 따로 다루고 있다. 이 법의 기초이론은 사회복지법의 해석학적 접근에 도움이 된다.

<표 3> 사회복지법 저서의 내용(총론)

목차		저자	박차상 외	김기원	신섭중	김근조	윤찬영	장동일	현외성	이태영 외	김만두	박석돈	김유성	박홍규 외	전광석
법학 기초이론	법의 규범성	*	*	-	-	-	-	-	-	-	-	-	-	-	-
	법의 목적	*	*	-	-	-	-	-	-	-	-	-	-	-	-
	법의 존재형식	*	*	-	-	-	-	-	-	-	-	-	-	-	-
	법의 분류	*	*	-	-	-	-	-	-	-	-	-	-	-	-
	법의 효력	*	*	-	-	-	-	-	-	-	-	-	-	-	-
	법의 해석과 적용방법	*	*	-	-	-	-	-	-	-	-	-	-	-	-
	법적 권리와 의무	*	*	-	-	-	-	-	-	-	-	-	-	-	-
	법치주의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 개관	개념(범위, 실질, 형식)	*	*	*	*	*	*	*	*	*	*	*	*	*	*
	이념(생존권, 실천이념)	*	*	*	-	*	*	*	*	*	*	*	*	*	*
	목적	-	*	-	-	-	*	-	-	*	*	-	-	-	-
	원리	-	*	-	*	-	*	-	-	*	*	-	-	-	-
	종류 및 체계	*	*	*	*	*	*	*	*	*	*	*	*	*	*
	법원(성문, 불문)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 의 법률관계	원인(시간, 행위, 행정행위)	-	-	-	*	-	-	-	-	-	-	-	-	-	-
	적용과 효력	*	-	-	*	*	-	-	-	-	-	-	-	-	-
	당사자	-	-	-	*	-	-	-	*	-	-	-	-	-	*
	권리(수급권)	*	-	-	-	*	*	*	*	*	-	-	*	-	*
	권리구제	*	-	-	*	*	*	*	*	*	-	-	-	-	*
	의무	*	-	-	*	-	*	-	*	-	-	-	-	-	-
벌칙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의 기원 및 발달	*	*	-	-	*	-	*	-	*	*	*	*	*	*	
한국사회복지법 발달(입법사)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연구)	-	*	-	-	*	-	*	-	*	*	-	-	-	*	
사회복지행정조직	-	*	-	*	-	*	-	*	*	*	-	-	-	-	
헌법과 사회복지법(기본권)	*	*	-	-	*	-	-	-	-	-	-	-	*	*	
소송	-	-	-	*	*	-	*	-	*	-	-	-	-	*	
판례	-	*	-	-	*	-	*	-	*	-	-	-	-	-	

총론의 분류 항목은 저서들의 목차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간혹 동일한 내용인데도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유사성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은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저술 내용을 유사하였다. 사회복지법 저서의 총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법의 이해를 위한 법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구별하여 저술한 서적을 2개 저서뿐이다(박차상의, 김기원)
- 사회복지의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설명하는 저서는 흔치 않았다.
- 사회보장법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사회보장법의 기초이론은 사회복지법의 기초이론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회보장법의 저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저술하고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간략하게 다루었다.
- 법은 권리의무관계의 표현이고, 사회복지법은 법의 속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3) 각론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라고 법적 정의를 하고 있어서(동법 제3조),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입법적 정의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각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4 참조).

-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구체적인 법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보험법으로 설명하기도한다(박홍규외). 연금법을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기도 한다(신섭중).
- 사회보장법의 저서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들을 제한적으로 다루면서 또한 ‘사회복지법’으로 지칭한다(박홍규외, 김유성).
- 공공부조법과 복지관련법의 구분이 모호하다. 예를 들면 의사상자예우법(김기원 - 복지관련법, 신섭중 - 공공부조)의 분류가 저자마다 다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주에 들지만 복지관련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김기원 - 복지관련법)
- 전광석은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관련법(노인, 아동, 장애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법을 사회보상법에 포함시켰다.
- 복지관련법의 종류가 기준이 없다.
-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범위는 비교적 명확한 것 같으나, 각 저자들이 취급하

<표 4> 사회복지법 저서의 내용(각본)

구분	저자	박차상외	김기원	신섭중	김근조	윤찬영	장동일	현의성	이태영외	김만두	박석돈	김유성	박홍규외	전광석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	*	-	*	-	*	*	-	-	-	*	*	*
	공무원연금법	-	-	-	*	-	*	-	-	-	-	*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	-	*	-	*	-	-	-	-	*	*	*
	군인연금법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	*	*	*	-	*	*	-	-	-	-	*	*
공공부조법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법을	-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	*	*	*	*	*	*	*	*	*	*	*	*
	의료급여법(또는 의료보호법)	*	*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	-	*	-	-	-	-	-	-	-	-	-	-
사회복지 서비스법	재해구호법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	*	*	*	*	*	*	*	*	*	*	*	*
	이동복지법	*	*	*	*	-	*	*	*	*	*	*	*	*
	노인복지법	*	*	*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	*	*	*	-	*	*	*	*	*	*	*	*
	모(부)자복지법	*	*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	*	*	*	-	*	*	*	*	*	*	*	*
	윤락행위방지법	*	-	*	-	-	*	*	*	*	*	*	*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	*	*	-	*	*	*	*	*	*	*	*
	정신보건법	*	*	*	*	-	*	*	*	*	*	*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법	*	*	*	*	-	*	*	*	*	*	*	*	*
	가정폭력범죄처벌등 특례법	-	*	*	*	-	-	-	-	-	-	-	-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을	-	*	*	*	-	*	*	*	*	*	*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	*	-	*	*	*	*	*	*	*	*
일제히중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	*	*	*	-	*	*	*	*	*	*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증진	-	*	*	*	-	*	*	*	*	*	*	*	*	
사회복지 관련법	최저임금법	-	-	*	-	-	*	*	*	*	*	*	*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고령자고용촉진법	-	*	*	-	-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청소년보호법	-	*	*	-	-	-	-	-	-	-	-	-	-
	지역보건법	-	-	*	-	-	-	-	-	-	-	-	-	-
	평생교육법	-	-	*	-	-	-	-	-	-	-	-	-	-
	환경정책기본법	-	-	*	-	-	-	-	-	-	-	-	-	-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	*	*	-	-	-	-	-	-	-	-	-	*
	의사상자예우법	-	*	*	-	-	-	-	-	-	-	-	-	-
	지방자치법	-	*	-	-	-	-	-	-	-	-	-	-	-
	근로자복지기본법	-	*	-	-	-	-	-	-	-	-	-	-	-
입금채권보장법	-	*	-	-	-	-	-	-	-	-	-	-	-	
범죄피해구조법	-	-	-	-	-	-	-	-	-	-	-	-	*	

는 법들의 수는 차이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적어도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법)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 내용의 소개에만 치중되어 있고, 이들 법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4. 법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1) 법의 전개와 사회복지실천

법을 제정하는 입법의 과정, 법을 수행하는 행정의 과정, 법을 판단하는 사법의 과정에서 그 기본적인 개념들과 이 각 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1) 법의 정의

다음의 정의는 법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밝혀준다(Kidder, 1983: 20-31). 법의 의미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면, 첫째, 근대화 과정으로서의 법이다. 이 의미는 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데, 근대 사회이후 법은 정부의 사회통제수단이며, 국가와 그 국민의 규범적 생활을 통제한다. 둘째, 사회통제형태로서의 법이다. 법은 양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이 권리와 의무가 법에 표현된 사회구조의 본질인 상호성과 공공성의 기제에 의해 강제된다. 셋째, 권위있는 물리적 강제로서의 법이다. 법은 특정행동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넷째, 정의로서의 법이다. 법은 부정확한 힘의 행사자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 다섯째, 관습으로서의 법이다. 법은 의회나 행정기관 같은 특별히 법적 문제를 다루도록 계획된 사회적 기관에 의해 재창조된 관습이다.

이처럼 법은 사회질서 속의 지위와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즉, 법은 사회통제로서의 법, 다양한 이익집단들간의 타협으로서의 법, 사회갈등해결의 무기로서의 법, 상호 관련된 사회체계들의 궁극적 산출로서의 법 등 여러 관점에서 표현되고 의미 부여될 수 있다.

또한 법의 역할은 긍정적이기도 하며 부정적이기도 하다. 긍정적 측면은 법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여 그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익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다. 법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 견해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실천보다 말로서 그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 속의 구성요소들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게 될 그런 상황을 예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사회복지 전문직은 법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적 가치, 태도, 또는 충동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이 문제들은 개인의 가치체계, 특정 주제에 대한 가치와 태도, 금지행동의 실행 등이 타인에게 무해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둘째,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특정 행위의 실행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입법과정

입법은 국가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정립한다. 입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입법부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규칙제정기관으로 여러 여론을 반영하다보니 일관성 없는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입법부는 다양한 여론의 타협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법은 전형적으로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익집단들의 협상결과를 반영하기도 한다.

입법부는 입법 목적의 수행을 염두에 둔다. 즉, 입법부는 정책수행에서 행정기관에 주로 의존하므로 입법 목적과 그 집행간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의 제정과정인 입법과정의 의미는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시사점을 준다. 입법과정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흔히 막후 교섭자의 역할과 같다. 사회복지실천가의 막후교섭자 역할이 사회복지정책 전반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준다.

입법과정에서 막후 교섭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Jewell, Malcolm E. and Samuel C. Patterson, 1977, Albert, 1986에서 재인용).

① 중간자(Contact man): 입법집단과 핵심적인 계약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이 중요한 것은 개입활동의 성공이 입법자와의 영향력있는 개별적 접촉력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조직가(Campaign Organizer): 자기조직체의 입법프로그램의 지지를 위해 일반 대중을 조직하는 역할을 말한다. ③ 정보제공자(the Informant): 반드시 특정 지위나 프로그램을 주장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말한다. 즉 정보제공의 중간자역할이다. ④ 감시자(the Watching): 입법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입법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말한다. 자기 집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체계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한다. ⑤ 전략가(the Strategist): 막후 교섭자의 역할들 중에서 보다 전문화된 역할인데, 입법의 전략을 세우는 역할이다.

만약 사회복지 전문직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즉, ① 심의할 법안을 회기 중에 앞서 미리 소개하여, 법안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② 법안을 지지할 입법가를 한 명 이상 확보한다. ③ 다수당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두 당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한다. ④ 관련행정단체장의 지지를 확보한다. ⑤ 법안을 지지할 영향력 있는 입법가를 위촉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⑥ 공청회를 열도록 요청하고 증언을 준비한다.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한 준비는 입법과정에서의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3) 행정과정

행정기관의 권위는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는 공화제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대표를 통한 정부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권력분배에 관한 총체적 의지를 헌법에 표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입법부(법률제정), 사법부(법률해석), 행정부(법률강제)에게 국가의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다. 행정기관은 여러 수준으로 존재하며 각각 법률상의 목표를 수행한다. 입법부는 법률제정의 권위체이지만, 법령상의 목적의 수행은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행정기관은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는 법률상의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스스로 준수해야할 규칙을 제정하여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스스로 통제한다.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이므로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에 속하나, 행정실무상의 필요할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기관은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이것을 위입입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된 규칙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법령상의 권한을 초과했을 때 월권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 이 규칙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수준의 시책(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나 그 공무원의 결정에 의해 영향받는 사람들은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과 기관규칙을 통한 목적수행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의 실천가의 역할은 행정기관의 규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⁶⁾의 심리와 관련하여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전에 행위주체인 공공행정기관의 주재아래 열린다. 이런 위원회의 준비와 심리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의 ct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법률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 ct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

6) 행정심판법 제6조

와 협력하여야 한다. 행정과정에서 법적용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관련된 규칙의 분석, 의견서 작성, 증언 등에 관한 자질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규칙의 제정, 집행, 시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가가 그 준비에 따라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덧붙여 언급할 것은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적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실천가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그 기관의 사업의 시작과 소멸, 각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존재확인과 구체적 내용의 이해차원에서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실천가의 법의 관련성이 보통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사법과정

사법부의 집행기관인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 해결의 종착점이다. 우리 나라는 분쟁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三審制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원은 분쟁의 양당사자(또는 대리인)를 출석시켜 서로의 주장을 청취하고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① 원고(原告) : 사회복지실천가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나 학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실천가는 법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피고(被告) : 사회복지실천가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을 변호해야 하거나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입양기관 및 사회복지실천가가 입양된 아동을 그 양부모로부터 데려 갈 경우, 그 양부모가 그 방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의 경우이다. ③ 옹호자 : 사회복지실천가는 법정에서 자신의 ct를 위해 그의 문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안하는 법정에서의 옹호적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가 증인 : 능력을 인정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증언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다. ⑤ 법원의 직원 : 사회복지실천가는 법원에서 사회복지적 사실의 발견과 지도감독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형사사건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 ‘판결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가는 이혼부부간의 미성년자녀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후견다툼에 대해 법원명령에 의해서 양당사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역할들은 사회복지의 실천가가 개입하려는 ct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법원을 배경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증인 또는 전문가증인(expert-witness), 전문증언(Hearing Test)과 같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Albert, 1986).

2) 사회복지실천의 영역과 법

법의 능력과 효과는 법, 사회정책 및 사회문제간의 상호교환에서 나타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ct의 욕구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법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입문제에 대해서 케이스워커, 임상사회사업가, 서비스기관 행정이 및 지역사회조직가 등이 다양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의 법적 측면을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사회복지의 목적에 따라서 적어도 지식적 기초, 전문직의 가치와 원리 및 사회정의에 대한 의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영역은 다양하다. 여기서 법과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몇 영역에서 법적인 쟁점을 살펴본다. 이런 탐구는 법-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실천가에게 그 문제의 특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1) 아동복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부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을 때에 국가와 사회는 그 아동에 대해서 양친적 책임을 진다. 때로는 부모가 자신의 양친적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동복지기관이 부모의 방치 또는 학대에 근거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직 경미한 사례이어서 여전히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담, 탁아 또는 다른 서비스 등을 강제하는 지도감독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욱 심각한 상황에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아동보호기관에게 아동의 후견을 일시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서 법원은 궁극적으로 그 아동이 입양될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부모의 양육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면 법원의 명령은 부모의 법률위반의 증거가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아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장하도록 법은 법원이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 형사사법제도

청소년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일단 범죄자로서가 아닌 비행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들은 연령 때문에 성인의 경우와 다른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다른 절차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관대한 처우를 받는다. 종종 법원은 비행에 따른 행동패턴을 査定하기 위해서 판결을 유예하기도 한다. 이 경우 비행 이후의 행동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면 그 청소년

의 위법 책임은 취소될 것이다.

법적 적정절차로 청소년의 권리가 정립되게된 주요 사례가 In re Gault사건(1967)이다. 이 판례에 따라서 청소년은 어떤 재판에서든 법률가의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건은 자백을 인정치 않는 보호권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시켰다. 이 Gault사건으로 인해 그 소송 절차가 너무 형식화되어 성인 대상의 형사소송의 분위기와 같아졌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Gault사건 이전에 비공식적인 처분으로 인해 청소년 권리의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67년이래 청소년비행자에 대해서는 유치청문회, 유죄선고청문회, 처분청문회라는 세 개의 청문회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청소년비행담당의 사회복지실천가는 각 청문회 단계에서 필요한 개입의 계획을 수립 실천하게 되므로, 청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보편적인 처분이 보호관찰이므로 이에 대한 개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3) 정신건강분야

정신병환자가 치료를 위해 법원조치인 병원입원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입원한다. 법원 명령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법적 조건으로서 사회복지실천가가 환자의 치료필요성을 증언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병원수용은 보통 그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위험하다는 인정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 수용 처분된 환자에게는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환자가 퇴원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자발적 환자는 퇴원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 후 퇴원할 수 있다. O'Conner v. Donaldson(1975)사건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약물의 사용과 새로운 치료형태의 등장으로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지역사회거주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로서 현재 법원은 정신건강전달체계와 연관되는 경우가 훨씬 적어졌다.

이처럼 정신건강분야의 ct들은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빈곤층의 세입자 문제

임차인이 임차계약내용이 기준이하이다라고 주장하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족이 있다. 이 소송은 임차계약내용이 “거주상태의 함축적인 보증(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을 보장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정서적, 정신적, 가족 우호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거주상태의 함축적인 보증”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

지시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보장해주는 원칙이다. 여기서 사회사업가는 기준 이하의 주거상태 때문에 발생할 임차인의 심리적 피해를 실제화하여 집주인의 거주상태의 함축적인 보증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사회사업적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 “개인과 환경간의 접합점에서의 개입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만약 사회사업가가 이러한 상황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빈곤의 대상인 ct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5) 법사회적 문제와 사회복지교육

위와 같은 법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가는 전문적 실천과 관련된 법적 기초지식의 개발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Jankovic and Green, 1981: 28-35)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법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회사업가가 관련된 법적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아직 부족하다. 즉, 교과과정에서 법전, 판례, 또는 행정명령을 접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이것은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접하고 해석을 내릴 때, 올바르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사업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전문직의 윤리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는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다. 미국의 많은 사회사업대학원들이 단순히 전통적이거나 심리 역동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임상교육에 있어서 정신건강영역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 성과와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Gaskins and Wasow, 1979: 129), 사회사업가에 대한 사회사업교육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 Wodarski(1979: 6)는 “인간의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전문가가 ct에의 개입결과에서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았을 때, 그 개입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윤리현장에 위반되는 전문직 윤리의 문제이다” 또는 “사회사업가는 효과적이고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로 확대시켰다.

셋째, 사회사업가도 법률 상담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 견해는 일차적으로 기관소속의 변호사로부터 나오겠지만, 보통 이들의 관심은 기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에 있으므로 사회사업가처럼 ct에 관심을 두고 판단내리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회사업가가 법적 절차를 다루는 기술의 학습이 느리다는 점이다. 실천가가 법률전문가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ct에 관한 기초지식과 그들의 권리, 그들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에서의 각종 절차, 그리고 법률, 행정명령, 판례법에 의해서 형성된 활동의 범위에 관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이 가정되어야 한다.

3) 사회사업실천에 필요한 법적 원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여러 문헌들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법적 지식의 중요성에 주장하는 논의들이 많이 나타난다. Dickson(1976: 277)은 “사회사업과 적정절차(due process)”에 관한 논문에서 사회사업전공 학생들은 최소한 법의 3가지 영역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판례와 법령들이 규칙, 절차 및 행동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는 범위, 둘째, 사법(司法)조직들의 특징과 그것이 법의 집행방법의 관계, 셋째, 사법체계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들 이해하기이다. 나아가 학생들은 “옹호적 입장”에 관한 교과과정, 법률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현장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Dickson, 1976: 276). 노인복지법의 노령수당에 관한 위헌소송은 우리 나라의 좋은 예이다(윤찬영, 2002).

Gaskins와 Wasow(1979: 130)는 소송에서의 변론과 관련하여 정신과 의사, 법률가 및 사회사업가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로서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무지, 질병과 관련법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지식의 부족, 둘째, 다른 전문직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무지, 셋째, 희귀한 사례에 근거한 정신건강체계에 관한 잘못된 견해, 넷째, 법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Brieland와 Lemmon(1977: 19)은 사회사업교육은 개인의 법적 권리와 책임보다는 사회정의와 인간 욕구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해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면서, 첫째, 결혼, 이혼, 아동양육, 아동후견에 관한 가족법, 둘째, 비행과 범죄, 셋째, 노인이나 정신질환자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수 집단의 법적 권리, 넷째, 사회사업실천과 관련된 쟁점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권한, ct의 법률구조 욕구, 사회사업가의 법적 권리와 책임, 대중의 보호, 전문직의 보존을 제안하였다(Brieland and Lemmon, 1977: 22).

Wilson(1978: 11-12)은 사회사업가 “비밀보장 유지문제”가 매일 행하는 실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그 복잡한 요소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원리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은 다음의 2개의 실증적 조사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Daley와 Williams(1979: 32-38)는 미국 텍사스의 아동보호영역의 사회사업가 164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보호서비스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아동보호서비스활동의 지식과 기술 영역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사례기록의 분석을 통해서 개발되었고, 이 중 4개의 항목이 법적 원리(지식)와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첫째, 보호자 지위 또는 후견을 얻는 방법, 둘째, 아동방치의 법적 정의, 셋째, 부모의 친권포기 절차, 넷째, 개별사회사업의 기법과 같

은 임시적 보호자 지위의 사용을 말한다. 이 조사는 이 영역의 워커들이 다른 지식/기술과 비교할 때 법적 원리 지식을 평균 이상으로 지니고 있으며, 보호서비스 경험과 법적 지식 영역간에 분명한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정신역동성”, “문화와 인종 요인”, “사회적 이탈” 및 “자원의 활용”과 같은 보통 예상되는 지식/기법의 영역과 함께, “법적 기법” 항목이 아동보호의 실천가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기법 영역의 하나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원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동복지사들의 훈련욕구에 관한 미국 테네시대학 사회사업계속교육연구소의 조사연구는 법적 원리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조사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Jankovic and Green, 1981). 이 조사에서 법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4개 연구질문이 있었는데,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지식 변수들(예를 들면, 법적 원리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과업들을 수행하는 능력)의 영향 정도, 그 업무의 수행 빈도, 이 업무에서 워커 능력의 근본적 중요성의 인식정도, 그 영역에서 능력부족이 끼치는 업무수행 저해정도이다.

여기에서 법적 원리와 관련하여 다음 7가지의 법적 영역의 지식과 능력이 확인되었다(Jankovic and Green, 1981). 즉, ① 아동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법과 법원의 해석방법, ② 법원 소송과 관련된 시기, ③ 법원 소송을 위한 사건기록들에서 증거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능력, ④ 소송에서 사람의 지위에 따른 법적 권위를 활용하는 능력 ⑤ 부모와 자녀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능력, ⑥ 법원심리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증언을 하는 능력, ⑦ 부모와 자녀가 법원소송과정에 관련된 이유를 알고 그들을 돕는 능력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사회복지법제의 교육적 관점에서 전문직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많이 이해되어야 하며, 전문직 양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5. 결론

1) 법사회적 관점과 교육의 방향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서 법사회적 영역을 깨닫게 되는데, 나아가 Albert(1986)는 첫째, 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형성을 위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며, 둘째, ct문제가 점점 “법적 문제”로 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ct들도 부지불식간에 법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Jankovic과 Green(1981)은 ‘법적 원리 실무지식’이 사회사업의 ‘전문적 실천’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사회사업의 전문교육이 사회사업실천에 적용되는 ‘법적 원리의 필요한 지식과 기법의 개발’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Mullen(1978)은 법-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의 가치적 관점을 인정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서비스전달과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가와 ct관계에서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 어떤 문제는 개입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법개정의 전략을 암시한다.
- 학문간 협력은 종종 갈등적이긴 하지만, 보통은 생산적이다.
- 몇몇 법률개념들과 기법들은 개입전략에서 필수적으로 보충적 역할을 한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제 학습의 관점은 법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학의 지식적 기반을 포괄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정할 수 있다.

- 법은 권리와 의무의 표현이다.
- 법은 형식성과 절차성을 중시한다.
- 법의 학습은 제도에 관련한 법정정책적 접근을 포함한다.
- 법의 학습은 임상적 개입과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법해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 법의 학습은 문제와 쟁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적 접근과 법적 사고의 통합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한 것에 바탕하고 있으며, 법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실천가의 효과적인 역할을 정립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상호 관련되어 있고, 그 관점 하나 하나가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와 법」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지녀야 한다.

- 법의 기초지식을 알게 한다.
- 법적 사고(legal mind)와 사회복지학적 접근이 조화되도록 돕는다.
- 사회복지권리의 법적 권리성을 이해토록 한다.
- 현존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알고, 해당 법의 문제와 쟁점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해토록 한다.
-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법적 환경을 이해하고 법의 활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가능케 한다.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법제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1단계: 법학이론의 기초교육

2단계: 사회복지법의 교육(기초)

3단계: 사회복지법의 교육(고급 - 개입기술)

3단계: 사회복지법 현장실습

2) 제언: 「사회복지와 법」 교육과 개념의 통합모델

이 모델은 위에서 문헌연구와 리서치에서 확인된 법의 특성과 ‘법적 이슈’의 다양성, 현행 「사회복지와 법」 교육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교과과정에 법적 특성이 통합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현재의 교과과정에서의 통합이나 다양한 법적 영역의 특별 교과목의 개발을 통해서, 법의 기초교육, 「사회복지와 법」 기초 교육과정, 「사회복지와 법」 특별 교육과정 및 「사회복지와 법」 현장 교육과정에서 법적 개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제안한다.

(1) 법의 기초지식

법의 기초지식은 법의 이념과 목적, 법의 권리 및 의무개념, 법의 생성과 소멸, 법의 해석과 적용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의 교육은 기존의 법학교육제도에서 교육코자하는 철저한 legal mind의 구축정도는 아닐 것이므로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교양수준에서 교육될 수 있겠으나, 바람직한 것은 학습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의 특징과 비교 설명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실천과 관련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학습을 교양과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법」의 교육과정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와 법」 기초 교육과정

이것은 ‘법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론수준의 교육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체계, 각 사회복지 영역 해당하는 법의 내용과 구조 등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이의 학습은 법의 형식성과 규범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이 조화되는 지도가 필요하다.

보통 우리의 사회복지법제 교육에서 법제 영역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구별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복지법의 영역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련법의 영역이 그 범위가 학자들에 따라 한정되지 않아서 다루어야 할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3개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법들도 다수이다. 따라서 이 모든 개별법은 한 학기에 소화하기에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유인지 모르지만 보통 교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모든 영역을 다루거나 사회복지서비스법만을 다루는

교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방법과 사회복지관련법의 제외한 3개 영역을 다루는 수업방법으로 구별되고 있다. 한 학기에 사회복지법들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후술하는 법사회적 영역의 개입기술까지 다룬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 부분을 2-3개 학기로 나누어 수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사회복지와 법」 고급 교육과정

전술한 사회복지법 기초교육이 법률이론의 기초지식과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이 조화된 상황에서 현행 사회복지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있는 교육이라면, 이 「사회복지와 법」 고급교육과정은 법사회적 영역에 대한 개입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고급과정은 사회복지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정에 개입하는 기술 및 법사회적 문제영역에서 필요한 쟁점의 이해와 해결기술 습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법정채과정에 개입하는 영역이며 소위 막후 교섭자로서의 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Albert, 1986). 아마도 임상적 개입에 전문인 사회사업가라 할지라도 법제도의 형성에 기여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장인협, 전남진 편역, 1982: 3-7) 이 기술의 습득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법사회적 문제에의 개입기술에 관해서는 그 실천에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Jankovic과 Green(1981)은 사회사업실천에서 7개의 법사회적 영역이 학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① 비밀보장, ② 사회사업 개입과 클라이언트의 법적 동의, ③ 부모와 아동의 법적 권리, ④ 사례 기록의 법적 효력을 위한 문서화, ⑤ 실천과정에서의 법적 권위의 활용, ⑥ 법원심리에서의 증언, ⑦ 전문직적 실천의 적법적 행위의무이다. 아직 사법적 과정에 개입하는 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으나, 학생들이 일반적인 개념적 배경을 갖게 되고 미래의 실천에 중요한 법적 원리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고급 교육과정의 학습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법률조사기법이다. 이것은 법령, 규칙 및 법원판결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 가능토록 해석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Albert(1986)에 따르면, 법률조사기법은 학생들에게 서비스전달과 전문직적 행위의 법적 자료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며, 법률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고, 법률생성과 소멸의 역동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4) 「사회복지와 법」 현장 실습

현장실습은 사회복지법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들을 실천해보는 기회이다. 학생들은 현장실습과정에서 법적 권위의 사용, ct 권리 보호 같은 기본적인 법적 원리를 통합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와 법」 현장실습은 실천현장에서의 법적 함의를 가

진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법사회적 영역의 토론과제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법」의 실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법사회적인 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의회, 행정기관, 법률구조기관, 법원, 보호관찰소, 직접적 서비스기관(아동, 노인, 정신보건, 병원) 등이 있다.

둘째, 법적 의미에서 현장실습의 전제조건을 이해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는 ct의 비밀보장원칙, 기록절차와 보호방법을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 (Jankovic and Green, 1981). 그러므로 수업과 현장토의에서 알게된 비밀보장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를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4가지 단계에 의한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 과정들은 한학기의 교과목에서는 소화될 수 없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12개 대학들이 사회복지실천과 법 전공의 두개의 학위를 수여하며(Albert, 1986), 한 교육분야에서의 여러 수업과목들이 다른 분야에서 선택과목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교육내용뿐만이 아니라, 2개 전공제, 학습에 필요한 적정 학기수, 학점수, 실습기관의 종류 등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현행의 교과과정 구조, 교수요원 현황, 추가의 교과목의 개발 가능성 등에 달려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법사회적 영역이 존재하고 이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와 법」의 교육은 변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와 법」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수, 학생,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조. 2000. 『사회복지법론』 개정5판. 서울: 광은기획.
- 김기원. 2002.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 김유성. 1992.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 김훈. 2003. ‘기독교와 NGO복지 교과과정 개발과 사회복지학의 기여: 사회복지학과 NGO의 통합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종합연구원 편. 『기독교 NGO복지』. 서울: 한들출판사.
- 박석돈. 1999. 『사회복지서비스법』 제6판. 서울: 삼영사.
-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 2003. 서울: 학지사.
- 박홍규, 권기홍. 1998.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서울: 삼영사.
- 신섭중, 신복기, 현외성, 김경호, 박경일, 김익균. 1991. 서울: 대학출판사.
- 윤찬영. 200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
- 이태영, 고영훈. 2002.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동인.
- 장동일.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장인협, 전남진 편역. 1982. 『사회복지정책』. 서울: 한국사회개발연구원.
- 전광석. 2003.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서울: 법문사.
-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편. 2002.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개정판. 서울: 동인.
-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 『2000년대 한국사회복지교육의 방향』. 연찬회 자료.
-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 Albert, Raymond. 1986. Law and Social Work Practice. Springer Publishing Co.
- Brieland, Don and John Lemmon. 1977. Social Work and the Law.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
- Daley, Michael R. and Martha Williams. 1979. "The Protective Services Questionnaire: Assessing Knowledge and Skill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15: 32-38.
- Dickson, Don. 1976. "Law in Social Work: Impact of Due Process." Social Work, Vol. 21: 277.
- Gaskins, Richard and Mona Wasow. 1979, "Vicious Circles in Civil Commitment." Social Work, vol 24 (March): 129.

- Jankovic, Joanne and Ronald K. Green. 1981.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 17, No.3: 28-35.
- Jewell, Malcolm E. and Samuel C. Patterson. 1977.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3rd Eds. Random House.
- Kidder, R. 1983. Connecting law and society.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3-31.
- Mullen, E. 1978.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Models for Effective Practice: A Method for Utilizing Research Findings to Guide Social Interven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1): 45-64.
- Wilson, Suanna J. 1978. Confidentiality in Social Work: issues and Principles. New York: The Free Press: xi-xii.
- Wodarksi, John. 1979. "Critical Issues in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 15: 6.